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 마련 등〉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18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3
2. 조문별 검토의견	3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 마련	3
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근거 등 마련	15
다.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 마련	20
라. 부칙	28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희용의원 등 14인
2. 제 출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 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 제8호의2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IV. 검토의견

1.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철민의원안(제2120605호), 정희용의원안(제2121473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에 회부(2023. 06.27.)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2. 조문별 검토의견

가. 농식품이용권의 정의신설 및 지급 근거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실시 중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3조의3제1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u>

현행	개정안
9. (생략) <u><신설></u>	<u>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 9.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 ③ (생략)</u> <u>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층의 영양개선·건강증진 및 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① 개정필요성 등

현행법은 제23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해 왔으며, 2024년 1월에는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화 될 예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381억원이 편성되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개요]

□ (목적)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구분	시범지역	지원기간	가구수	예산 (국비)
2020년	4개 시·군·구 (세종시, 완주군, 김천시, 청양군)	4개월 (9~12월)	1.5만 가구	35억원
2021년	10개 시·군·구 (거제시, 김제시, 괴산군, 당진시, 문경시, 밀양시, 예천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12개월	3.3만 가구	89억원

구분	시범지역	지원기간	가구수	예산 (국비)
2022년	15개 시·군·구 (거제시, 김제시, 괴산군, 당진시, 밀양시, 양평군, 웅진군, 예천군, 장성군, 정읍시, 청도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부산진구(2개동))	8개월 (3~10월)	4.7만 가구	89억원
2023년	18개 시·군·구 (부산진구(2개동), 달성군, 웅진군, 평창군, 화천군, 괴산군, 충주시, 청양군, 당진시, 고창군, 김제시, 장성군, 해남군, 강진군, 청도군, 예천군, 거제시, 밀양시)	10개월 (3~12월)	6.6만 가구	148억원
2024년	24개 시·군·구 (부산진구(1개동), 달성군, 웅진군, 영월군, 충주시, 괴산군, 당진시, 청양군, 예산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상주시, 청도군, 예천군,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서귀포시)	6개월 (3~8월)	9.7만 가구(p)	148억원

☐ (시범지역) 본사업 설계 보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확대

☐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지원금액	40	57	69	80	89	98	106	113	120	126

☐ (지원품목)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입 불가)

* ⁽²⁰⁾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 ^(21.추가)육류, 잡곡, 꿀 → ^(22.추가)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사용처) 수혜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용처 확대 지원

* ⁽²²⁾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 → ^(23.추가)GS25, GS더프레시, 남도장터(온라인) → ^(24.추가)CU, 아이마트(밀양 수산점), 인더마켓(온라인)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취약 계층의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영양 섭취 격차가 완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 대비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따른 섭취 횟수 ('23)〕

구분		고기,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중위소득 50% 이하	지급 전	80.7%	94.6%	90.9%	46.1%
	지급 후	93.0%	99.6%	103.8%	50.8%
중위소득 50% 초과		100.3%	106.4%	97.7%	65.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또한 농식품바우처 지원('23년 총사업비 278억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농업생산액이 47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으로 농업생산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농식품 소비 증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사업의 본사업화에 따른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 2,091억원으로 추산¹⁾되는 바, 동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시나리오1 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 가구원수별 농식품이용권 단가에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현행 시범사업과 동일))

②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23조의3제1항에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농식품이용권 시범사업('24년 기준)과 본사업을 비교해 보면,

적용지역은 24개 시범지자체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가구인원수별 지원액도 상향되었으나, 적용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9.8만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초·중고생을 포함한 가구(8.7만가구)’로 축소되고, 대상품목도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임.

(농식품이용권 시범사업과 본사업 비교)

구분	시범사업('24)	본사업('25~)	비고
목적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 지원으로 국민 먹거리 안정망 확충과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한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식량안보 강화	
대상	○ <u>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u>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u>9.8만 가구</u>	○ <u>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u>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u>8.7만 가구</u>	
예산 (국비)	○ <u>148억원</u>	○ <u>381억원</u>	국비·지방비 5:5 매칭
지원액	○ <u>4인 가구 기준, 월 8만원</u>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 상이	○ <u>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u>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 상이	

구분	시범사업('24)	본사업('25~)	비고
지역	○ 24개 시범지자체	○ 전국 229개 지자체	
사용처	○ 9개 유통사, 23천여 매장	○ 44개 유통사, 58천여 매장	
품목	○ 10품목 * 국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7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이는 재정여건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노인가구 및 1인~2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향후 순차적으로 농식품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에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자 다소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범위의 대강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²⁾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제23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권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2)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문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³⁾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3)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식품 한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3조에서 농식품이용권을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표”로 정의하고, 제23조의3에서는 그 지급대상을 ‘식품’이 아닌 ‘농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식품⁴⁾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농식품’ 이용 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 해당 용어를 ‘농식품’으로, ‘식품’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면 해당 용어를 ‘식품’으로 조정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③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이용권의 지급 뿐 아니라, 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이용권의 사용처에서 이용권 제시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수급자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용권 사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경우, 벌칙·과태료 등의 부과로 연계되는 경우가 다수임.

농식품이용권의 경우에도 해당 조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하여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이용권은 신청주의라는 점에서 수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매년 사용처를 공모·선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공급자 등과는 법적 지위가 달라 별도 근거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유사입법례 비교)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에너지법	평생교육법	환경보건법	산림복지법
이용권의 사용규정	×	○	○	×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준용규정	×	×	×	×	○
부정발급자에 대한 벌칙	×	○	○	×	-
판매·대여자에 대한 벌칙	×	○	○	×	-
이용권사용 거부시 등록취소	×	×	×	×	○
이용권사용 거부시 과태료	×	×	○	×	○

※ 유사입법례

[에너지법]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법]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유사사업 중복에 관한 사항

한편, 개정안의 농식품이용권은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유사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중복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하였음.

(식품지원사업 통합·연계방안)

- (중앙부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안」(‘23.5월)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중심 복지부 식품지원사업 통합·연계 방안 협의(‘24.5월)
 - (실버건강식생활, 저소득 독거노인) 농식품 바우처와의 중복성 및 사업 규모(‘23년 5개 시군구) 고려하여 폐지 협의
 - * 다만 시기는 농식품 바우처 추진 확대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영양플러스, 저소득 임산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조정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연계를 위해 사업지침 개정 등 협의 추진
- (지자체) 사업조정 논의 진행 중으로 향후 지속 협의할 계획
 - * 경기도는 지원내용(꾸러미) 조정 및 강원은 사업종료 예정, 서울은 지속 협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근거 등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식품이용권’ 수급자격 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이용권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원천 정보보유기관의 정보제공 동의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국세청 등

국세청,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 제공기관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바 없음

3) 검토의견

2024년 기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조달하여, 농식품바우처 신청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그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가구원 수 별 농식품이용권 지급 금액(시범사업 기준))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지원금액	40	57	69	80	89	98	106	113	120	1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농식품바우처 신청자에 대한 지급결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저소득층 해당 여부, 가구원 수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는 농식품바우처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음.

개정안 제2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활용시 필요한 원천 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제3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식품이용권 신청 절차 간소화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⁵⁾에 따르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

[환경보건법]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안 제23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유사입법례에 비해 확장적이면서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고, 농식품이용권의 경우는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문을 수정⁶⁾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유사입법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체화⁷⁾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자료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6)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7)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제공자료 목록(안))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 ⑤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⑥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관련 개정안 반영 시 제도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시 자료제공 조치를 위한 협의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농림부는 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음.

다.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생략)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생략)	<u>청문을 하여야 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u>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3조의5(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제23조의6(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현행 제23조의4와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식품이용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안정적 실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3) 검토의견

① 개정필요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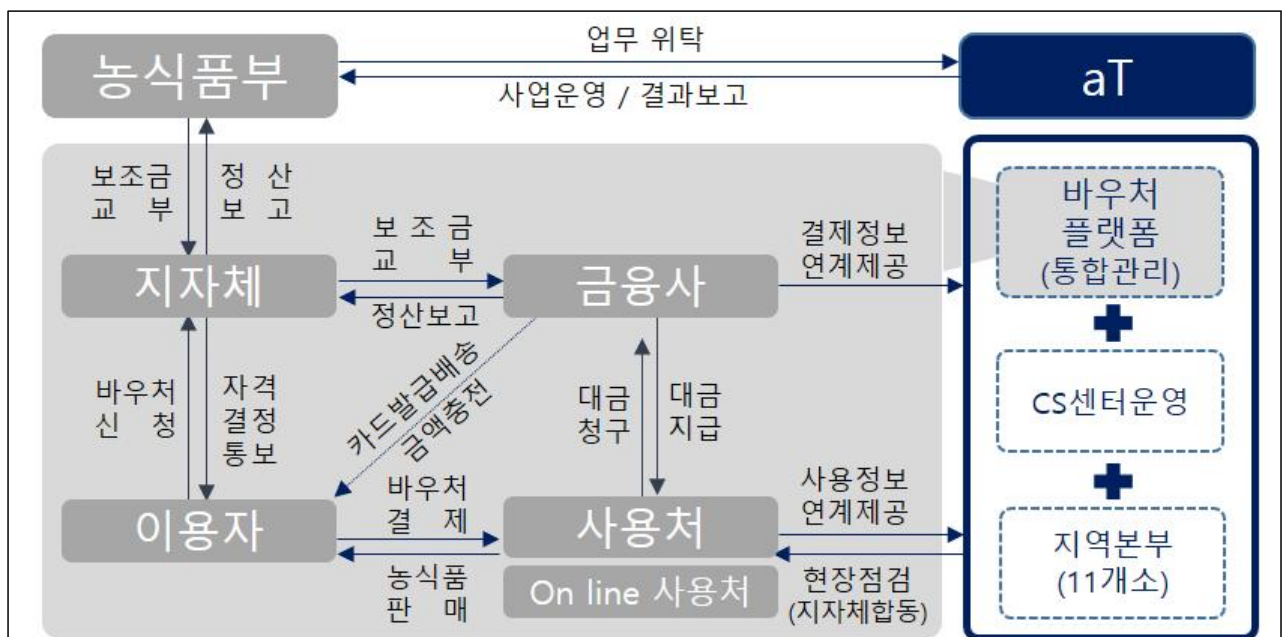
개정안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업무에 특화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전문적·안정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침익적 행정처분인 전담기관 지정 취소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필수적 청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담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향후 농식품이용권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신청단계(대상자 온라인 및 현장 신청) → 선정단계(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 전 자이용권 지급·사용 단계(대상자가 농식품이용권 이용) → 사후관리 (이의 신청 처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이루어질 예정임.

(농식품이용권 사업 운영 체계도(안))



- (농식품부)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예산 편성,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사업 총괄
- (지자체) 관할 지역 사업 총괄, 관내 카드발급·이용 및 현장점검 등(시·도)
 - (시·군·구) 관내 카드 발급·이용 관리·감독 및 현장점검, 사용처 점검 및 지원,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

- (읍·면·동) 농식품바우처 신청접수, 이용 안내 등
- (전담기관(aT)) 사업 운영 총괄, 시스템 구축·운영, CS센터 운영, 카드발급·이용 및 사용처 관리, 식생활교육 및 성과분석 관리 등
- (사용처) 바우처 지원품목 안정적 공급·관리 및 바우처 결제시스템 구축, 결제 관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관련 자료 제출 등
- (금융사(농협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배송, 사용처 결제 대금 정산 관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관련 자료 제출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4.9.13 제출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농식품이용권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에 있음.

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담기관은 사업운영 총괄, 시스템 구축·운영, 카드 발급·이용 및 사용처 관리, 고객상담, 식생활교육 및 성과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예정임.

개정안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전담기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금융사, 사용처, 이용자 간 연계와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구축·운영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됨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업무의 하나로 추가⁸⁾하

8)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운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에서도 전담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유사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개요)

1. 구축 목적

- ☐ 금융사·유통사·행정정보 등 연계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을 통해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운영기관의 사업관리 효율화

2. 추진 경과

- ☐ (‘23.12) 「취약계층 비대면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 * 발주 :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자 : 비즈플레이(주) / 계약금액 : 1,106백만원
- ☐ (‘24.4) 「취약계층 비대면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구축 완료
 - * 구축 완료에 따라 플랫폼 일부 기능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추진(‘24.7월~‘25.1월)
- ☐ (‘24.10~)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능 고도화 용역 추진 예정

3. 주요 기능

- ☐ 비대면(온라인·ARS) 사업 신청 도입으로 **이용자 접근성** 제고
 -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면 접수에 따른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등의 접근성을 제고

□ 마이페이지 활용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친화적 지원체계 구축

- 이용자 현재 위치 기반 사용처 가맹점명, 주소, 연락처 등 정보 조회
- 이용자 정보변경, 잔액조회, 온·오프라인 사용처 이용내역 조회, 분실신고 및 재발급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온라인사용처 쇼핑물을 연계하여 플랫폼 내 원스톱 쇼핑 지원

□ 유관기관 등 시스템 정보 연계 제공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행복e음」 연계 통해 전국 3,524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플랫폼 내에서 이용가구 정보를 직접 조회* 가능하여 신속행정 실현
 - * (기존) 복지부서 협조 통해 가구정보 조회 → (개선) 정보연계 통해 플랫폼에서 직접 조회
- 금융사(농협은행)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자체별, 사용처별, 이용자별, 카드별 거래·정산내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예산 관리 내실화
- 44개 유통사, 58천여 가맹점별·상품별 거래데이터를 수집하여 취약계층 영양개선 등 정책 성과분석 기초자료 확보 기반 마련

③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전담기관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에너지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기관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관 임직원을 별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에너지법]

제2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④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에 관한 사항

「에너지법」, 「환경보건법」 및 「산림복지법」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유사입법례 비교)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에너지법	평생교육법	환경보건법	산림복지법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	○ (1천만원이하)	×	○ (1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방식의 과징금임.

개정안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정지가 지급대상 국민에게 미칠 불편을 감안하여 유사입법례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현행법 위상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과징금 등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에너지법]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환경보전법]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기타 체계자구 수정 사항

아울러, 제23조의4제2항제2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전담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같은 조 제5항에서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를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라. 부칙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는 법 공포 후 6개월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사업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에 포함된 국정과제이자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문의처

02)6788-5417

참고1

유사 바우처 사업 비교표

구분	농식품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구기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24년 예산	148억 (국비 50%, 지방비 50%)	6,856억 (국비 100%)	2,397억 (국비 70%, 지방비 30%)	80억 (복권기금 100%)	- '25년 신규
지원 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등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요금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상품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의료비 지원, 건강나누리 캠프 등
지원 방법	농식품바우처카드	[실물] 국민행복카드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가상] 고지서 요금 자동 차감	문화누리카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국민카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절기 31.3천원, 동절기 248.2천원(1인 가구 기준,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당 연 11만원 지원	1인당 10만원 지원	1인당 10만원 지원
사용처	(오프라인)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GS더프레시, CU, 아이마트(밀양수산점)/ (온라인) 농협몰, 남도장터, 우농물산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가능 가맹점	문화(서점 등), 관광(교통수단 등), 체육(스포츠관람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전담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사업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참고 2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현황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실적

○ (시범지역) 본사업 설계 검증을 위해 바우처 시범지역 다양화

* ('20) 4개 지자체(도농복합형, 농촌형) → ('21) 10개(도농복합형, 농촌형) → ('22) 15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 ('23) 18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 ('24) 24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 (지원품목) 수혜자 수요 반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원품목 확대*

* ('20)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 ('21.추가)육류, 잡곡 꿀 → ('22.추가)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전달체계) 수혜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 하고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대상 꾸러미 배송서비스**를 추진

* ('22)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 → ('23추가)GS25, GS더프레시, 남도장터(온라인) → ('24)CU, 아이마트(밀양 수산점), 인더마켓 온누리몰(온라인)

** 꾸러미 지원현황(지자체 자율) : ('21) 6개 시군구(도입) → ('22) 11 → ('23) 12 → ('24) 10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성과('23)

○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영양 섭취 격차 완화 등 식생활 개선

<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 대비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따른 섭취 횟수 비교('23) >

구분		고기,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중위소득 50% 이하	지급 전	80.7%	94.6%	90.9%	46.1%
	지급 후	93.0%	99.6%	103.8%	50.8%
중위소득 50% 초과		100.3%	106.4%	97.7%	65.5%

○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으로 농업생산액 증가에 기여

- 농식품바우처 지원('23년 총사업비 278억 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농업생산액이 4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

참고 3

농식품 바우처 예타 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결과

1. 농식품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평가 결과) 조건부 추진(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4.1월)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타당성 인정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예산편성)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조정,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지방비 분담 협의
- (중복조정) 중앙 및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조정 방안 마련
- (설계보완) ①지원품목 조정, ②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 ③사업 성과지표 보완 등 세부 사업설계 보완

2. 농식품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후속조치 이행 결과

※ 농식품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 추진 결정('24.1월)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24.8월)에 보고하여 예타 절차 최종완료

☐ '25년 예산안 편성

- (지원대상) 지원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범위 조정

* (예타안)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
(조정안)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재정분담 등) 지자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통해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및 재정 분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수렴 추진

* 광역지자체 1회(2.27), 기초지자체 3회(3.7, 3.15, 4.5) 추진

- (관계부처) 국비·지방비 분담률은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 및 행안부(지방재정관리위원회)와 협의

□ 유사·중복사업 조정

- (중앙부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안」(‘23.5월)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중심 복지부 식품지원사업 통합·연계 방안 협의(‘24.5월)
- (실버건강식생활, 저소득 독거노인) 농식품 바우처와의 중복성 및 사업 규모(‘23년 5개 시군구) 고려하여 폐지 협의
 - * 다만 시기는 농식품 바우처 추진 확대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영양플러스, 저소득 임산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조정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연계를 위해 사업지침 개정 등 협의 추진
- (지자체) 사업조정 논의 진행 중으로 향후 지속 협의할 계획
 - * 경기도는 지원내용(꾸러미) 조정 및 강원은 사업종료 예정, 서울은 지속 협의

□ 사업설계 보완

- (품목 조정) 이용률 및 영양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품목을 조정하고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품목 선정·관리 기준 마련
 - * (현행)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조정안) 국산 과일 채소(단순가공채소류 포함),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 (전달체계 구축)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처 확대(6월)
 - * (‘24) 24개 시군구, 2천여 개 매장 → (‘25) 전국 229개 시군구, 6만여 개 매장(잠정)
- 도서 지역, 거동 불편자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꾸러미 배송 서비스 등 대안적 전달체계 검토
- (모니터링) 사업 성과지표 보완 및 중장기 성과 모니터링 강화
 - 사업 성과지표 추가* 및 장기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 사업성과 점검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 * (시범사업) 농식품 바우처 이용률 → (본사업) 영양섭취 개선을, 농산물 소비증가액 추가
 - **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가구 설문조사에 농식품 바우처 이용 여부 추가 요청

참고 4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개요(정부안 기준)

- (지원내용)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하며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식품 활용성과 구매율 제고
- ('25년 예산(안)) 총사업비 773억 원(국비 381, 지방비 392)
 - * 국비 보조율 서울 30%, 기타 지역 50%(단 전담기관 사업운영비 100%)
- (지원대상)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전국)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
지급금액	40,000원	65,000원	83,000원	100,000원	...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급
 - * '25년 지원품목 분류 : ①국산 채소류, 과일류 / ②국산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 ③국산 잡곡류, 두부류(분류별 3가지 종류 이상, 종류별 3개 상품 이상 필수 취급)
- 농식품 바우처 전달체계
 - (신청·접수) 이용자는 방문 신청·온라인·전화(ARS) 등을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 접수
 - (발급·배송)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자격 검증 후 바우처 카드를 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시)로 배송
 - (사용·관리) 온·오프라인 사용처, 이동형 장터, 꾸러미 등을 통해 지원품목을 지원하고 품목 관리,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점검 추진